

예산총칙

2019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74,480,081	17,234,402
일반회계	481,296,524	14,438,896
특별회계	93,183,557	2,795,507
기타특별회계	93,183,557	2,795,507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4,319,599	429,588
의료급여기금조성특별회계	780,156	23,405
주민소득지원자금특별회계	354,000	10,62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121,200	3,636
발전소주변지역특별회계	5,092,285	152,769
중소기업육성기금운영특별회계	443,600	13,308
농업재해복구자금특별회계	2,129	64
수질개선기금사업특별회계	15,081,945	452,458
산업단지조성특별회계	56,278,000	1,688,340
자활기금운영특별회계	710,643	21,31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92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1,8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회계연도중에 내시되는 보조금, 교부세, 조정교부금, 특정목적기부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